

강원관광대학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법 제 75조 제 2항 및 명예교수규칙과 본교 교원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교의 명예교수 추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교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
2. 학술 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
3. 본교 학장을 역임한 자

제 4 조 (추대절차) ① 명예교수는 인사위원회 및 학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추대한다.

② 명예교수의 추대를 제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공적서
2. 명예교수 추대위원회의 의견서
3.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
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 5 조 (처우) ①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②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의는 주당 6시간을 담당할 수 있다.

③ 명예교수에 대한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 내규에 따른다.

제 6 조 (추대)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추대장을 수여한다.

제 7 조 (명예교수 추대의 취소)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추대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1호 >

제 호

추대장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상기 인을 강원관광대학의 명예교수로
추대합니다.

20 . . .

강원관광대학장

